마장자이 B4블록 호반베르디움 입주자 모집공고

※ 본 이해의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하스재은 안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은 2017.09.20 개정된 "주택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국민 특별공급 대상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7.11.02 입니다.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은 편다기준일입니다.)
- 이 주택은 주택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간주택이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가점제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공동주택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0조에 따라 전매제한 6년에 이와 주택으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장먼저 공급합니다.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0조에 의거 본 주택은 대구도 택지개발지구 등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해당지역(수성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가 청약신청이 가능하나, 해당 주택건설지역(수성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 중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가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공급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2017.11.02) 현재 거주여부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공급 세대수의 30%를 우선 공급하며, 경기도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공급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2017.11.02) 현재 이전시켜 1년 이상 거주한 자(2016.11.02 이전부터 계속 거주)에게 일반공급 세대수의 30%를 우선 공급하며, 경기도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공급합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0조에 의거 본 주택은 대구도 택지개발지구 등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해당지역(수성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6개월 이전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0조에 의거 예비입주자 선정방식이 추첨제에서 가점제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하고 남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청약신청자수가 해당 주택형의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2017.11.02)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수성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2011.11.02 이전부터 계속 거주)에 한하여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약신청자수가 해당 주택형의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는 경우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가점이 동점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경기도 거주기간 산정시 경기도 관내 행정구역간 거주기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시 → 수원시(예시는 편다기준일 기준)로 거주기간 산정하며 거주기간 계산 시 1년 미만 경우에는 0점으로 산정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이전시에서 계속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가점제 적용 시 경기도 거주기간 산정하며 거주기간 계산 시 1년 미만 경우에는 0점으로 산정합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이전시에서 계속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가점제 적용 시 경기도 거주기간 산정하며 거주기간 계산 시 1년 미만 경우에는 0점으로 산정합니다.
- 경기도 거주기간 산정시 경기도 관내 행정구역간 거주기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시 → 수원시(예시는 편다기준일 기준)로 거주기간 산정하며 거주기간 계산 시 1년 미만 경우에는 0점으로 산정합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이전시에서 계속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가점제 적용 시 경기도 거주기간 산정하며 거주기간 계산 시 1년 미만 경우에는 0점으로 산정합니다.

※ 공급대상

구분	아파트명	주택형 (주거전용면적기준)	세대별 입주면적		기타 공용면적	합계	세대별 대지지분 (㎡)	계	공급세대수			최하층 배정 세대수	입주예정 시기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기관추천 (일반)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	일반공급		
특별공급	마장자이 B4블록	2017001520-01	82.9343A	82.9343	25.9324	108.8667	42.7743	151.6410	60.4063	522	52	52	15	39	31	2019년 11월
		2017001520-02	82.9823B	82.9823	25.7575	108.7398	42.7743	151.5386	60.4402	11	1	1	1	–	8	1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주택형	분양가격		계약금	중도 금					잔금
	공급세대수	층 구분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시	2017.12.26.	2018.03.14.	2018.06.14.	2018.09.14.	2018.12.14.	2019.03.14.	2019.06.14.	2019.09.14.	입주지정일
82.9343A	83A	5층	58,293,000	178,407,000	236,700,000	10,000,000	23,670,000	23,670,000	23,670,000	23,670,000	23,670,000	23,670,000	23,670,000	23,670,000	74,400,000
		2층	59,293,000	183,107,000	242,400,000	10,000,000	24,240,000	24,240,000	24,240,000	24,240,000	24,240,000	24,240,000	24,240,000	24,240,000	76,320,000
		3층	61,293,000	197,207,000	258,500,000	10,000,000	25,850,000	25,850,000	25,850,000	25,850,000	25,850,000	25,850,000	25,850,000	25,850,000	81,400,000
		4층	61,293,000	205,207,000	266,500,000	10,000,000	26,650,000	26,650,000	26,650,000	26,650,000	26,650,000	26,650,000	26,650,000	26,650,000	79,300,000
		기준층	404	26,800,000	26,800,000	10,000,000	2,680,000	2,680,000	2,680,000	2,680,000	2,680,000	2,680,000	2,680,000	2,680,000	8,440,000
82.9823B	83B	1층	58,327,000	180,973,000	239,300,000	10,000,000	23,930,000	23,930,000	23,930,000	23,930,000	23,930,000	23,930,000	23,930,000	23,930,000	75,300,000
		2층	59,327,000	188,773,000	248,100,000	10,000,000	24,810,000	24,810,000	24,810,000	24,810,000	24,810,000	24,810,000	24,810,000	24,810,000	78,100,000
		3층	61,327,000	196,573,000	257,900,000	10,000,000	25,790,000	25,790,000	25,790,000	25,790,000	25,790,000	25,790,000	25,790,000	25,790,000	81,100,000
		4층	61,327,000	204,373,000	265,700,000	10,000,000	26,570,000	26,570,000	26,570,000	26,570,000	26,570,000	26,570,000	26,570,000	26,570,000	83,600,000
		기준층	404	27,600,000	27,600,000	10,000,000	2,760,000	2,760,000	2,760,000	2,760,000	2,760,000	2,760,000	2,760,000	2,760,000	8,680,000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X 0.3025 하는 경우(㎡) X 0.3025

※ 소수점 발생으로 인한 세대별 합계 차이는 발생하지 않음.

※ 주택형 B타입 : 판상형

주택형(㎡)	82.9343A	82.9823B	비고
건축구조 및 약식 표기	83A	83B	

※ 주택형의 구분은 공급상의 표기이며, 건축구조 및 가입금(그림)보기(발코니)등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

1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이천시청 건축과 → 61250호(2017.11.01)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모전리 마장택지개발지구 B4블록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5층 ~ 지상 최고 29층 총 53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기관추천 특별공급 53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53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53세대,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53세대, 일반공급 321세대]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구분	아파트명	주택형 (주거전용면적기준)	세대별 입주면적			합계	세대별 대지지분 (㎡)	계	공급세대수				최하층 배정 세대수	입주예정 시기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기관추천 (일반)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	일반공급	
분양공고	마장자이 B4블록	2017001520-01	82.9343A	82.9343	25.9324	108.8667	42.7743	151.6410	60.4063	522	52	52	15	39	31	2019년 11월
		2017001520-02	82.9823B	82.9823	25.7575	108.7398	42.7743	151.5386	60.4402	11	1	1	1	–	8	1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주택형	분양가격		계약금	중도 금					잔금
	공급세대수	층 구분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시	2017.12.26.	2018.03.14.	2018.06.14.	2018.09.14.	2018.12.14.	2019.03.14.	2019.06.14.	2019.09.14.	입주지정일
82.9343A	83A	5층	58,293,000	178,407,000	236,700,000	10,000,000	23,670,000	23,670,000	23,670,000	23,670,000	23,670,000	23,670,000	23,670,000	23,670,000	74,400,000
		2층	59,293,000	183,107,000	242,400,000	10,000,000	24,240,000	24,240,000	24,240,000	24,240,000	24,240,000	24,240,000	24,240,000	24,240,000	76,320,000
		3층	61,293,000	197,207,000	258,500,000	10,000,000	25,850,000	25,850,000	25,850,000	25,850,000	25,850,000	25,850,000	25,850,000	25,850,000	81,400,000
		4층	61,293,000	205,207,000	266,500,000	10,000,000	26,650,000	26,650,000	26,650,000	26,650,000	26,650,000	26,650,000	26,650,000	26,650,000	79,300,000
		기준층	404	26,800,000	26,800,000	10,000,000	2,680,000	2,680,000	2,680,000	2,680,000	2,680,000	2,680,000	2,680,000	2,680,000	8,440,000
82.9823B	83B	1층	58,327,000	180,973,000	239,300,000	10,000,000	23,930,000	23,930,000	23,930,000	23,930,000	23,930,000	23,930,000	23,930,000	23,930,000	75,300,000
		2층	59,327,000	188,773,000	248,100,000	10,000,000	24,810,000	24,810,000	24,810,000	24,810,000	24,810,000	24,810,000	24,810,000	24,810,000	78,100,000
		3층	61,327,000	196,573,000	257,900,000	10,000,000	25,790,000	25,790,000	25,790,000	25,790,000	25,790,000	25,790,000	25,790,000	25,790,000	81,100,000
		4층	61,327,000	204,373,000	265,700,000	10,000,000	26,570,000	26,570,000	26,570,000	26,570,000	26,570,000	26,570,000	26,570,000	26,570,000	83,600,000
		기준층	404	27,600,000	27,600,000	10,000,000	2,760,000	2,760,000	2,760,000	2,760,000	2,760,000	2,760,000	2,760,000	2,760,000	8,680,000

■ 인증주택의 청약 예시기준[국가유공자 특별공급]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1항 관련)

구분	이천시 /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주택형의 구분은 공급상의 표기이며, 건축구조 및 가입금(그림)보기(발코니)등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

■ 공통 유의 사항

- 청약자 중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발급 받은 이해의 공증주택임.
- 주택형 표기는 "주거전용면적으로 표기하고 이와 같이 표기하는 것이 청약자의 편의를 위한 것임.
- 세대별 분양면적에는 개인 복도, 엘리베이터,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하고 공급면적만 표기하였음.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공급면적 비율로 안분 배분된 것으로 계약 이후 주거공용면적이 당해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비면적의 일부로서 입주 후 추가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음을 양지 바람.
- 주거공용부분 등 : 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름. 자세한 사항은 문의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역특화촉진권 또는 공무원임대단지 등이 있는 경우 지분이 변동될 수 있음.
- 상기 세대별 부대면적 소유권 이전 등 등기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예정자의 부담(각종 세금 및 등기비용 포함)으로 일괄 취득하여 입주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함.
- 주거공용부분 등 : 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름. 자세한 사항은 문의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역특화촉진권 또는 공무원임대단지 등이 있는 경우 지분이 변동될 수 있음.
- 상기 세대별 부대면적 소유권 이전 등 등기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예정자의 부담(각종 세금 및 등기비용 포함)으로 일괄 취득하여 입주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함.
- 층수는 건축 등록 해당 주택법이 허한 건축의 최상층(일부분은 층수 및 동수 등은 일부의 공간에서 증감될 수 있음.
- 상기 공급금액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국민 특별공급 대상 주택으로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 주택법 제57